

# 사슴 자가도축 어떻게 되나?

- 법 시행시 범법자 양산 우려, 처벌조항 엄격 -

내년 1월1일부터 사슴 등 8개 가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가 받은 정식 도축장에서의 도축대상으로 포함, 시행됨에 따라 사슴사육 농가의 반발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사슴을 중탕가공하기 위해 현재처럼 농장에서 임의도축 하다 적발될 경우 법 제45조제1항1호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사슴사육 농가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당장 정식 도축장 이용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본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운영중인 전국 1백13개 포유류 도축장 중 사슴도축이 가능하도록 허가 받은 도축장은 강원도에만 3곳. 이들중 실제 사슴도축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곳은 평창기업(평창)과 하이마트(원주) 등 두 곳이다. 또 사슴도축 허가가 없는 도축장 중 사슴도축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도축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앞으로 사슴도축을 위한 별도의 라인을 갖출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곳이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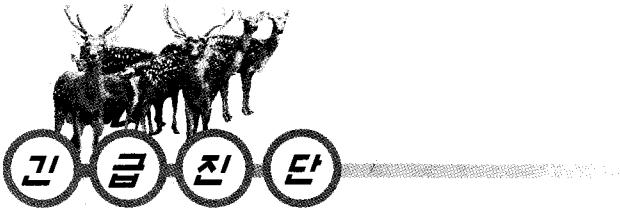
즉, 내년 1월1일 이후 사슴사육 농가가 도축을 위해 정식 도축장을 찾아간다고 해도 도축을 해주는 곳이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농림부는 기존 도축장에 도축허가 대상 축종을 추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시설 개선시 자금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적어도 기존 도축장이 사슴도축 허가를 추가 취득하고 사슴도축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자진해서 갖출 만큼 사슴도축에 대해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제 조사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본회의 의견이다.

## 법 시행되나 정식도축 할 곳은 없어

사슴의 도축은 식육이용 목적이 아닌 자가 중탕가공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1회 도축두수가 1~2두에 불과하고 그것도 월 한 두 차례에 그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탕가공 과정을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으므로 수십, 수백리 떨어진 정식 도축장을 이용하는 것은 자가중탕 가공에 의한 농가수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사슴을 도축장까지 이동시키려면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운송차량이 있어야 하고, 도축후 멀리 떨어진 도축



장으로부터 변질되지 않도록 운송해 올 수 있는 냉장, 냉동차량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월 1회 1두 정도 도축을 위해 농가단위로 이 같은 장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축장들도 당장 사슴도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우선 도축물량이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 억원씩이나 예산을 들여 사슴도축 라인을 설비할 수 없고, 계류장과 이동통로 등도 일반 가축과는 다른 별도의 안전성이 보장된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근 도축장을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 자가도축을 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멀리 떨어진 도축장을 찾아 소단위 도축을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 사슴농가의 중요 소득원인 중탕가공 판매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 농가, 도축장 모두 준비 안된 상태

본회는 이처럼 사슴 자가도축 중단의 문제점을 감안, 지난 4월 30일과 5월 24일 각각 사슴 자가도축 지속허용을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농림부에 정식 건의한 바 있다. 본회 의견의 요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사슴 자가도축 및 처리요령을 제정해 일정기준의 작업시설 및 처리시설을 갖춘 농가가 생산자 단체장

의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시, 군에 신고할 경우 자가도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 일반 도축장의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위생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본회 등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교육을 대행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

본회는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5월 24일에는 재 건의를 통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서 '사슴'을 제외하여 임의 자가도축을 허용하는 한편 지난해 신설된 법 제40조의 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규정을 적용, 식육 및 가공을 위한 대량도축시에는 정식 도축장 또는 전문도축장에 의뢰하여 도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유는 지난 98년 사슴을 도축대상 수축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시 본회 및 양록축협 등이 정부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유예기간을 요구했고, 그 유예기간이 2002년 12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법 자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슴을 제외시키려면 당시 그 같은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농축산물의 위생문제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공용이든 식육용이든 고기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슴만을 위생관리 범주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농림부의 입장이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10월10일 축산물가 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개정의견 제출을 본회에 요구해옴에 따라 11월 15일 사슴 자가도축 및 처리기준 제정을 골자로 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 의견의 주요내용은 사슴농가에서 자가도축과 정식도축장 이용을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가소비용 도축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또 이에 대한 세부법령안과 시설기준 등도 함께 마련해 제출했다. 이는 농장에서의 자가도축 행위에 대해 고발 등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융통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이며, 가공품 판매시 문제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정식도축장 병행이용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 사슴 자가도축 및 처리기준 제정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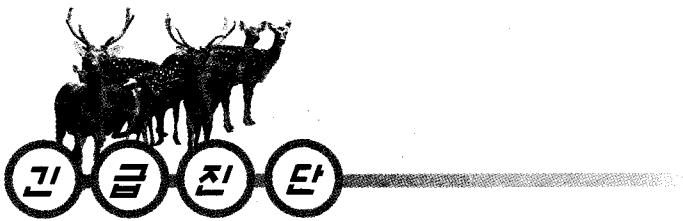
본회는 일단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법개정이 2003년 상반기에나 이루어질 것을 감안, 또 다른 자가도축 지속허용 보장 수단으로 법 제7조1항3호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가소비용 자가도축 허용지역 지정'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법상 자가도축을 할 수 있는 가축은 소, 말을 제외한 가축으로,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자가도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 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현재로서는 도서, 벽지 등 도축장

의 이용이 심히 어려운 곳으로, 민통선 내 지역이나 섭지역만이 지정되고 있어 이의 추진이 여의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슴사육 농가의 중탕가공에 의한 소득비중과 제반 여건, 사슴도축 및 이용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의하여 전국 모든 지역이 사슴 자가소비를 위한 자가도축 허용 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해를 돋기 위해 이제까지의 진행과 정을 토대로 사슴사육 농가 최대 관심사인 사슴 자가도축 '허용'과 '금지'에 대한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98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슴' 의무도축 대상에 포함
- 단, 부칙에 시행유예조항을 두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행유예
- 2003년 1월1일부터 사슴도축은 허가 받은 정식 도축장에서만 가능
- 임의도축 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본회 사슴 정식도축장 이용 불가 및 자가도축 지속허용 건의
- '사슴 자가도축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정하고 위생교육 의무화하여 자가도축 인정 요구
- 2003년 상반기 법 개정시 본회안 반영 지속 추진
- 자가소비를 위한 자가도축 허용지역 지정 전국 시, 군단위 일제 추진



- 지역지정 없이 자가소비용 도축 허용(돼지, 닭 등 준용)여부 유권해석 요구
- 기타 자가소비의 범위에 대한 관계기관 유권해석 추진(소비자의 농장현장 사슴구입, 도축 이용 등)
- 기존 도축장 사슴도축 여부 파악(시행중), 농림부에 대책마련 촉구

### 농가의 현실적 이익 우선 고려돼야

사슴의 자가도축 문제는 사슴사육 농가의 현실적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처해야 합이 분명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슴고기의 대중화, 가공제품의 다양화 추진 등을 고려한다면 자가도축에 의한 농가단위 가공품 생산판매만을 고집할 입장도 아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축산물 위생을 경쟁력 제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음을 볼 때 궁극적으로는 양육업의 산업화를 위한 정식 도축을 감안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농가의 자가중탕가공과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된다면 본회가 농림부에 건의한 ‘사슴 자가도축 및 처리시설 기준’에 의한 안정적 자가도축 보장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치열한 국제경쟁을 앞두고 가장 한국적인 생산물 소비방안도 경쟁력 함양의 수단으로 가치를 뽑을 수 있다면 자가도축의 합법성 확보에 의한 자가가공 판매 지원도 신중히 검토해 볼 일이다.

사슴사육 농가의 자가도축이 어떠한 형태로든 보장될 것인가. 정부와 농가

모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다음은 본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검토 의견,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사슴 자가도축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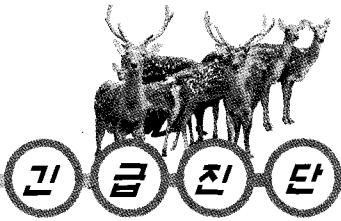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검토의견

#### ▣ 의견의 요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의무도축 대상 확대(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로 사슴의 자가도축에 의한 자가중탕가공 사업이 중단되어 농가소득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는 바, 식육목적의 대량도축은 정식 도축장 및 전문도축장을 통하여 하되 자가중탕가공용 소단위 도축에 한하여는 자가도축 시설 및 처리시설 기준을 정하여 자가도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함.

#### ▣ 사슴농장 및 중탕가공 현황

- 1) 사육가구수 1만5천호에서 약 20만두 사육
- 2) 전체농가의 70%는 소형종인 꽃사슴 사육, 호당 평균 20두로 영세함
- 3) 사슴농장의 대부분이 산간 오지에 위치하고 있음
- 4) 사슴도축은 녹용 및 사슴육을 이용한 중탕가공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고기로서의 유통 및 판매는 전무함



- 5) 이에 따라 1회 도축단위가 1두 정도에 불과함
- 6) 도축횟수 또한 1개월당 1~2회로 미미한 설정임

#### ▣ 의무도축 확대 적용시 문제점

- 1) 녹용과 함께 농가 주요 소득원인 중탕가공 판매 중단으로 경영난 가중
- 2) 소비자 농장방문 확인을 통한 차별화 지속 불가
- 3) 1두 도축을 위한 원거리 도축장 이용은 비용부담(도축장으로의 운반시 폐쇄 운반시설 이용, 도축후 냉동 또는 냉장차량 이용)으로 사실상 불가
- 4) 지역 또는 권역별 사슴전문도축장 설치시 도축물량 부족으로 상시운영이 불가능하고, 전국단위 1~2개소 운영시 거리 및 운반시설 등 문제점 발생
- 5) 기존 포유류 도축장 이용시 야생습성의 사슴 계류시설, 작업장 이동통로, 별도 작업라인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보완은 비경제적임
- 6) 기존 도축장 중 사슴을 도축할 수 있는 라인이 갖추어진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슴도축을 계획중인 곳은 거의 없음

#### ▣ 본회 의견

-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자가 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를 개정
  - 허가 받은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

- 살·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
- 식육의 목적이 아닌 자가중탕 가공하기 위한 사슴 자가도축을 포함
  - 농가로 하여금 법에서 정하는 자가도축 및 처리시설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 군에 신고토록 함
- 2) 별표 16으로 사슴 자가도축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을 규정
  - 작업장의 면적, 바닥, 벽면, 급수시설, 배수구, 지붕 등 설치기준을 정함
  - 처리시설로서 정화조의 종류와 유효용량, 설치장소 등을 정함
- 3) 별지 제 4호 서식으로 사슴 자가도축 시설 설치 신고서를 규정
  - 신고인과 작업장, 처리시설, 중탕가공시설 등을 기입
  - 작업장 단면도, 정화조 설치확인서, 생산자 단체장의 시설설치 확인서, 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구비서류로 정함
- 4) 시행규칙 제 46조(위생교육 대상자)를 개정
  - 교육대상에 “자가도축을 실시하는 농장주”를 추가
- 5) 시행규칙 제 47조(위생교육실시기관 등)를 개정
  - 자가도축 및 처리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위생교육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동업 생산자단체가 맡도록 함
- 6) 시행규칙 제 48조(교육시간)를 개정
    - 도축업의 영업자 등 기준에 준하여 매년 4시간으로 교육시간을 정함